제91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자산보유자 인정기준(신설) ○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범위 확대 –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 중 다음의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자산 보유자로 인정 ·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·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(자본잠식률 50% 이하) ·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“적정” ▶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2.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(신설) ○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증권 일부(5%)를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여 –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 위험보유 의무 면제 – 다양한 위험보유방식(수직,수평,혼합적)을 허용하고, 그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▶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업무수탁인 자격요건 마련(신설) ㅇ 업무수탁인이 자산관리자 겸임시 갖춰야 할 이해상충 방지 체계 규정 –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기준 확보 –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 –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 직원 겸직·파견 금지 –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 간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분리 공간 확보 –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 ▶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	
2	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대게 포획 금지기간 추가(강화) ㅇ 근해통발어업 종사자는 강원도 연안*에서 매년 10월 3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통발을 통한 대게포획을 할 수 없음 * 강원도 고성군, 양양군, 삼척시 해역 및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 해역 ▶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(강화)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조정,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 제시 등 – 전기냉온수기, 공기청정기, 제습기의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제시 등 – 셋톱박스의 대기모드별(능동대기모드, 수동대기모드)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모두 만족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▶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,제5조제10조제16조 2.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(식기세척기, 이동식에어컨디셔너)(신설) ㅇ 식기세척기, 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하고, 효율관리 기준(적용범위, 측정방법 효율기준 등) 마련 ▶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,제10조제16조 3.효율관리기자재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(신설) ㅇ 효율관리기자재인 의류건조기 적용범위를 전기세탁기와 동일하게 확대하고,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대용량 의류건조기 시험방법 신설 – (現) 표준건조용량 20kg까지 → (改) 표준건조용량 25kg까지 ▶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직관형 LED램프 및 펌프(고효율에너지기자재), 컴퓨터 및 복합기(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) 품목의 효율관리기자재 지정(신설) ㅇ LED램프, 펌프, 컴퓨터, 복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기준 신설 ▶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,제5조제10조제16조	
4	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HACCP 교육훈련 종류 규정 (강화) ㅇ 의무교육으로 전환된 HACCP 교육훈련의 명칭을 ‘신규 교육훈련’과 ‘정기 교육훈련’으로 정의 ㅇ 정기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 ㅇ HACCP 교육훈련 미이수 시 시정명령 처분 ▶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2.사료 폐기 등 조치 대상 범위 확대(강화) ㅇ 성분등록된 성분의 최대량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도 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▶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평가기관의 자격 및 규모(신설) ㅇ 민간 운영기관이 추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 기관의 자격 등을 정하는 조항으로 성과 평가 관련 직전연도 3개년 내의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, 전담인력 2명 이상 등을 갖춘 법인으로 규정함 ▶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	1.비중요
6	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검사대상 가축의 확대(강화) ㅇ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가축의 범위를 조정함 – 결핵병 검사 대상에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를 추가 –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발생 등의 사유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거래되는 소,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의 검사 월령을 단축(기존 12개월 이상 → 6개월 이상) – 시험소장은 필요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▶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감염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재검사(강화) ㅇ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보완함 – 결핵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토록 검사규정 개선 –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한 검사 근거 마련 – 시·도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 상황,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▶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,제12조 3.발생농장 재입식 기준(강화) ㅇ 브루셀라병 발생농장에서 가축 재입식 전에 필요한 환경검사 시료 채취 등 환경검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▶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전국단위 모집 특례 요건 및 모집 비율(신설) ○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특례를 유지하되,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소재 지역(시·도)의 학생을 모집정원의 20%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 ▶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 2.특목고·자사고 입학전형 방법(신설) ○ 안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(외국어고,국제고)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'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 등 의무 부여 ▶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.특목고·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(신설) ○ 특목고(외고, 국제고) 및 자사고의 지정·운영,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 ▶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,제91조의3	1.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8	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심사 강화(제출서류)(강화) ○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 심사 강화를 위해 서류검토 제출자료 범위 확대 ▶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7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세부사항(강화) ○ 현재 진보된 기술수준과 품질위험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무균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·이행 요구 * 최근 PIC/S GMP 규정 부속서 I(무균의약품 제조)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 ▶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	1.비중요
10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및 방법 등(신설) ○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및 표시의무 사항, 표시방법 등 규정 – 게임산업법 상 확률형 아이템 정의(제2조 제11호)를 세분화하여,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표시의무 사항, 표시방법 등 기준을 정함 ▶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	1.비중요
11	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(환경부)	1.환경표지대상제품 신설(4개 제품) 및 인증기준 강화(3개 제품)(강화) ○ 환경표지 인증기준 품목군 4개 품목군 신설 및 기존 3개 품목군 내 세부 환경성 기준 및 시험법 개선을 통한 정비 ▶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전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상급종합병원의 지정 평가항목 및 방법 강화(강화) ㅇ 상대평가 기준 평가항목 신설·강화(안 별표 5) – (회송체계 지표 신설) 경증회송률(가중치 5%) – (의료인 수 지표 강화)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신설(가중치 2%) – (공공성 지표 신설) △중환자실 병상 확보율(가중치 2%) △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(가중치 2%) △코로나19 참여기여도(가중치 2%) – (환자구성 비율 강화) △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향 △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하향 – (가점 신설) 희귀질환 및 중증응급질환 비율 ▶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7조	1.비중요
13	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및 기준 강화(강화) ㅇ 환자구성비율 기준 강화(전문진료질병군 34% 이상, 단순진료질병군 12% 이하,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7% 이하) ㅇ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, 중환자실 병상 확보, 음압격리병상 확보 ▶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, 별표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4	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기능성 원료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개정(강화) ㅇ『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』제3. “개별 기준 및 규격 개정 ” – ① 기능성 원료 9종(코엔자임Q10, 스쿠알렌, 공액리놀레산,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, NAG(N–아세틸 글루코사민), 귀리식이섬유, 알로에 겔, 이눌린/치커리추출물, 키토산/키토올리고당)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– ②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3종 일일섭취량 변경 – ③ 공액리놀레산, 키토산/키토올리고당의 중금속 규격 강화 – ④ 알로에 겔의 기능(또는 지표성분) 규격 강화 ▶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조	1.비중요
15	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 및 선임기준(신설) ㅇ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규정 ㅇ 통합관리사업장의 사업자가 선임해야 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종류 및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규모에 따른 선임기준 규정 ㅇ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규정 ▶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,제24조의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(신설) ㅇ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미준수 시 행정처분기준 신설 ▶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3.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의무(신설) ㅇ 통합환경관리인은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마다 보수교육 이수 ㅇ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, 시간,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▶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7	
16	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(신설) ㅇ 재향군인회의 회계연도를 정부회계연도에 일치 시키고 회계처리 원칙으로 발생주의, 복식부기를 채택하며 재향군인회의 결산 및 예산 보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재향군인회 재무회계운영에 투명성을 도모 ▶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8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(신설) ○ 수익사업 운영 현황, 수익금 사용 실적, 승인 조건의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을 상세 규정 ▶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8조의4 3.수익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(신설) ○ 수익사업 위반 횟수, 경중을 고려하여 시정조치, 수익사업 정지,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부과 기준을 마련 ▶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9조	
17	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개정안 (인사혁신처)	1.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(강화) ○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(3개 추가* 지정 및 기타 명칭 변경 반영) * 구미도시공사, 대구정책연구원, 광주연구원 ▶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전체	1.비중요
18	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(인사혁신처)	1.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(강화) ○ 2023년 고시(‘22.12.30.) 대비 안전감독업무 3개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를 신규로 추가 지정 * 남부공항서비스(주), 한국제품안전관리원,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▶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전체	1.비중요